

#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0. 22

사회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0. 6
- 다. 회부일자 : 94. 10. 10
- 라. 상정일자 : 94. 10. 22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사유

-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원 재활용 추진을 통한 쓰레기를 감량화하므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

### 나. 주요골자

-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법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 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
  - 폐기물관리법 : 최저 25,000원~최고 1,000,000원까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최저 300,000원~최고 3,000,000원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병훈)**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으로 환경보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1항은 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구술 또는 서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처분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단부분은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상.하한선의 범위를 정해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나, 후단부분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항목별로 부과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전, 후단부분의 내용이 상호배치된다고 사료됨.

이 점에 대한 중점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청소과장 이남용>**

○ 본 안건이 제출되기 전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결로 아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본 (안)건을 검토해보니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 된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이 클 것으로 사전홍보는 어떻게 했는가?

- 93년 11월 2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4조에 따라 부과하였음.
- 95년 1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기 실시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유선방송을 통해 1일 2차례 이상하였으며 반상회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음.

○ 조례 제정후 몇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재까지 징수실적과 유원지의 단속인원의 대책 및 현장스티커 발부시 단속한계는?

● 93년 10월부터 조례에 의거 93년 6건 548,000원을 100% 징수하였고 94년 72건, 148만원 정도 부과하여 이중 50건에 1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금액은 고지서 납부기일 미도래 및 체납건수가 다소있으나 즉시 징수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단속인력면에서는 간선도로변을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청소과 인원으로 달서구 전체를 단속하는데는 애로가 많으며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거나 시민협조없이 불가능하여 동단위 자율감시단을 발족하여 효과를 올리고 추석절이나 행락철에는 지역교통과 청소과 해당구역의 동직원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단속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스티커제도는 단속공무원이 인지를 할때 투기를 하면 현장에서 조례에 정한 금액을 30일간의 납기를 두고 발부함.

## 5. 토론요지

○ 찬 성 :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불법투기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 조정 및 현장 스티커제도는 과태료 부과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며 아울러 자원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반 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안 요지

○ 조례(안) 제3조(청문) 1항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청문의 방법을 확대

○ 조례(안)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를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를 삭제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수정(안)

나. 수정내용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첨부 : 수정조례안 1부

##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 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u>서면</u>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략]	제3조(청문) ① ..... ..... ..... <u>구술 또는</u> <u>서면</u> ..... .....	청문방법을 확대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는 <u>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u> <u>결과등을 참작하되</u> (별표 1)의 [생략]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 ..... .....( <u>삭 제</u> )..... ..... .....	구청장의 재량권 제한

##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별표 1]중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2. [별표 1]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제1항 "가"목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 제1호 및 제2호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부 칙

제15조의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14조 및 [별표 2]는 이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